

|  |  |
|--|--|
| <p>○ 본 조례안은 2000. 10. 20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00. 10. 24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</p> <p>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<br/>         우수한 문화재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·도 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, 구입공고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·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.<br/>         ※현재는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구입공고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·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음.</p> <p>3. 검토의견<br/> 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/>         ○ 본 조례안은 우수한 문화재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·도 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, 구입공고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·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됨.<br/>         ○ 현재 유물 구입은, 유물구입공고→유물수집실무위원회 평가(1차)→유물평가위원회 평가(2차)→개관준비위원회 기획·유물분과회의의 평가(3차)→유물구입계약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.<br/>         ○ 그러나 경매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긴급성을 고려하여 3단계 과정 중 중간단계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·평가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, 이번에 개정 요구한 부분도 국가 또는 시·도 지정 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입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.<br/>         국가 및 시·도지정 문화재는 그 희소 가치로 인하여 수집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유물로서의 가치가 기왕에 검증된 것인 만큼 신속한 수집을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</p> | <p>필요할 것으로 보여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함.</p> <p>○ 이번에 개정 요구된 부분 외에 동 조례 제5조(유물기증)제1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인용조문 중 “제25조”는 ‘99년도 12월 동법 개정시 내용 변경 없이 “제8조”로 개정되었으므로 동조례 제5조 역시 개정되어야 함.<br/>         ※제5조(유물기증) ①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<br/>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br/>         제5조제1항중 “제25조”를 “제8조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<br/>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         제4조제2항중 “시장이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”를 “시장이 경매유물, 국가 또는 시·도 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”로 한다.<br/>         제5조제1항중 “제25조”를 “제8조”로 한다.<br/>         제8조제3항중 “유물과장”을 “유물보존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|
|--|--|